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오 성 배**

초 록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분석범주를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성취’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시 출신국가, 연령, 가정배경, 재학 유무, 재학종인 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을 참여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편)입학의 기회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진입한 이후에도 수업 적응, 동료집단과의 관계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성취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인성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이종고 삼중고를 겪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인권보장, 사회평화, 경제발전 등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도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배경과 재학학교의 특성에 따른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교육기회, 이주노동자, 다문화교육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 론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¹⁾ 가정 자녀가 교육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탐색한다.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주 여성과 그 자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로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08년도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2007년도 대비 23.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자는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국제결혼은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 혼인 가운데 11.1%(36,204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58,00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만6세 이하가 33,140명(57%)을 차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여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윤형숙, 2004; 설동훈 외, 2005 등),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장과정에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기회의 배분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오성배, 2005; 오성배 2006; 조혜영 외, 2008; 이재분 외, 2008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 이른바 ‘불법체류자’²⁾로 몰릴 위기에서 저임금 ‘3D’ 업종에 투입

1) 이 글의 ‘이주노동자’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육체 노동자를 일컫는다.

2)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지 비자의 기한이 지났을 뿐이고, 한국의 3D 업종의 주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자원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라는 가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체류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이나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불법’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그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과 그들이 잠재적인 문제아로 낙인찍힐 우려도 존재하기에 좀 더 신중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되어 체계적인 언어와 문화적응의 기회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석원정, 2002).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부모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원, 2006; 이민경·김경근, 2009).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영역과 대상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성혁, 2007).

특히, 이들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의 성장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 모두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의 양상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국내 체류 자체의 가능 여부, 학교 입학 기회(공교육 진입 기회)가 다르다. 그리고 성장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의 정도가 다르다. 성장환경 또한 다르다. 대부분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친가가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달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이고, 친지의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성장 과정의 인적 환경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적응 속도와 상태가 다를 수 있다. 구성원의 주 연령대도 다르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대부분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연령대이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영아기부터 10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연령대가 다양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별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설동훈 외(2003)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교육의 미비와 학습부진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집단 따돌림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등 맥락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양적 경향성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실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김정원의 연구(2006), 이민경·김경근(2009)의 연구 등이 있다. 김정원(2006)의 연구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시혜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

게 받으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실태와 관련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을 특정국가(몽골) 출신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한정하고 있고, 심층면접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민경·김경근의 연구(2009)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적응의 전략을 심층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 동화’와 ‘거리두기’,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재학중인 학생들의 동화과정을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는 이미 국내에 적지 않은 수가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 그들의 성장 후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모국으로 돌아갈 가능성 못지않게 정주(定住)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 가정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한 범주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과정을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성취’로 범주를 구분하고,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한다. 특히, 연구 대상의 출신국가를 다양화하고, 학교급을 안배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상의 어려움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한 초등학교의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에 대한 참여관찰을 면밀히 진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증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1987년도 6,409명에 불과하던 것(설동훈, 2005)이 2008년에는 437,727명(행정안전부, 2008)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그러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통계자료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하기도 한다⁴⁾.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⁵⁾.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또한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정착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모국에 있던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간의 혼인(또는 동거)을 통하여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여 입국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⁶⁾, 후자의 경우 별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정 자녀 일반 정규학교 재학생 수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자녀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 자녀 가운데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학하는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통계 발표는 2006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4)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정부 부처간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취학률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학생에 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일 연령의 자녀들은 약 30%가 많아 이들이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설명된 것이다. 실제 미취학한 자녀도 없지 않으나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두드러져 보인다. 교과부 자료는 학교를 통하여 구두 조사로 진행되고, 행안부 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조사로 이루어진다. 교과부 조사는 구두 조사이기 때문에 축소되어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조사는 재혼 가정의 초혼기 출생 자녀들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편의 초혼기 자녀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분류되는 것이다.

5) 법무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국내 불법체류자는 223,464명이다(법무부, 2008).

6)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자 등을 팔아서 국내에서의 신분증이나 증명서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의 수치들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2008년 현재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이 강화된 2007년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2008년 기준 107명)에 비하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314명)가 많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981명)는 훨씬 많다는 점은 앞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표 1〉 외국인 가정 자녀 재학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들의 부모 출신국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이 가장 많은 368명이고 다음으로 일본이 308명,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284명, 필리핀이 111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남부아시아, 미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베트남 등의 순서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은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들의 부모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주노동자들임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⁷⁾.

〈표 2〉 초·중·고 재학 외국인 자녀 국적별 현황

시도	부 모 국 적 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 시아	남부아 시아	중앙아 시아	유럽	기타	계
계	308	284	40	111	30	10	34	368	8	43	39	13	93	1,402
비율	22.0	20.3	2.9	7.9	2.1	0.7	2.4	26.2	0.6	3.1	2.8	0.9	6.6	1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7) 〈표 2〉의 학생들 외에 별도로 7,800여명(2008년 현재)이 외국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학교 밖 취학연령대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수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 중 취학연령대(만7세-18세)는 17,287명(2006년 4월 기준)으로 추정되어 8,000 여명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국무총리실, 2008). 그리고 이 외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미등록체류 신분이 다수일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 자녀 또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단체 종사자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정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끼리 결혼 또는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불러들이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통계 추이와 현장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관련 제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불법’ 체류자 신분 자녀들의 교육 기회에 대해서도 합법 체류자들과 동등하게 그 권리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UN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의 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정부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9조)고 되어 있고,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제10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입국들은 “어떠한 차별 없이 그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제2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권리(제28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2008년 2월). 이 개정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제19조), 중학교의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전입학이 허용되고(제75조),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전형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82조).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국내에서의 학교급에 따른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학교급으로 진학이 가능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이러한 교육기회의 권리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008년 9월 시행). 이 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1항). 그리고 제10조 2항과 3항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협약과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받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입장의 차이,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관리자의 입장,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원기반의 구축 정도,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의 정서 등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실체는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별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8)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기회 배분의 필요성

교육관련 제도상으로는 최소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적 평등’(Coleman, 1968)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느 아동·청소년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실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적 삶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3)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 5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공부 진도에 대한 걱정이 크며(33.3%), 자녀양육에 한국어와 한글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64.1%)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원(2006)은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의 입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보다는 학교가 베푸는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분이 항시 존재하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경·김경근(2009)은 부모가 자녀의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지역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앞서 2장 1절의 증가 실태에서 언급되었던 8,000여명 이상의 미취학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본인들의 의지로 학교 교육을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들의 부모가 상당수 불법체류자이거나 ‘예비’ 불법체류자인 상황에서 자녀의 등교가 단속의 불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할 것이다⁹⁾.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온전한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우선 그들이 한국 국적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까지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을 돕는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교육기회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실현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출생에 따라오는 우연한 결과(accidents of birth)로 국내에 유입된 것이고, 국내의 여느 아동·청소년에 비해

9) 이것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 출발점이 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補償)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들도 사회의 엄연한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Banks, 1994). 두 번째로, 사회평화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회가 평화적으로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예절과 도덕, 규범을 준수 하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또는 머무르기를) 기대한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성인기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정주(定住)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과거 단순노무직을 넘어서 이른바 '3D' 업종의 숙련공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9. 1. 17일자 기사 참조). 이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経団連)이 2007년, 2008년에 잇달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국내 수요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주(定住)의 필요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언한 것(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07; 毎日新聞 2008. 10. 13일자 기사 참조)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전문가 또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국가 사이의 가교(架橋)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 과정상의 실태와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분석 범주를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성취'로 구분하고자 한다(강태중, 2002). '교육 접근'은 학교에 진입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육 경험'은 학교에 진입한 이후에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일반 아동·청소년과 달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육 성취'는 학교교육의 결과인 성취 정도가 일반 아동·청소년과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III.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그들의 교육 문제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부모, 담임교사, 시민단체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출신국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의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을 참여관찰하였다.

심층면담 대상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는 몽골 출신들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포함하였고¹⁰⁾, 가정배경과 연령,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형태 등을 안배하여 면담대상을 선정하였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며 취업하고 있는 가정과 부모 중 한 쪽이 국내 취업 연한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가정, 모친이 한국 남성과 재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 가정을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본국 직업과 학력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 형태의 경우 일반 정규학교,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 외국인 학교의 한 형태인 M(가명)학교, 학교밖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무학)를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¹¹⁾(〈표 3〉 참조).

10) 이주노동자 가운데 몽골 출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집단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녀와 동반 거주 비중은 대단히 높으며, 특히 국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수에 있어 몽골 출신이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2〉 참조).

11) 연구 대상 부모의 학력을 안배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자녀를 입국시킨 경우는 대부분 부모의 학력이 높은 상황이었다. 부모의 학력이나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하위직이었을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 굳이 한국에 까지 데려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민단체 종사자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였다.

<표 3> 심층 면담자(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와 부모)의 주요 배경

사례 번호	이름	출신 국	성별	나이	입국 연도	현재 소속	부의 모국 직업	부의 현재 직업	부의 학력	모의 모국 직업	모의 현재 직업	모의 학력	거주 지역	동거 형태	체류 형태
1-1	몽사가	몽골	남	18세	2003	k중 2년	교사	무직	대졸	교사	공원	대졸	서울	모-동거 부-모국	불법
1-2	오랑	몽골	여	17세	2005	k중 2년	공무원	공원	고졸	무직	공원	고졸	경기	부모 -동거	불법
1-3	썸	몽골	남	19세	2005	무	교사	무직	대졸	교사	공원	대졸	서울	모-동거 부-모국	불법
1-4	아리오	몽골	여	15세	2002	M학교 중 2년	무직	무직	대졸	무직	공원	고졸	경기	모-동거 부-모국	불법
1-5	탕소트	몽골	여	10세	2006	M학교 초 3년				무직	무직	고졸	인천	모-동거	합법
1-6	오대위	중국	남	14세	2006	무지개 초 6년	상업	상업	고졸	무직	상업	고졸	경기	부모 -동거	합법
1-7	반돌프	러시 아	남	13세	2007	무지개 초 5년	운동선 수	공원	고졸	무직	공원	고졸	경기	부모 -동거	합법
1-8	샤니	우즈 벡	여	13세	2006	무지개 초 5년	상업	공원	고졸	무직	공원	고졸	경기	부모 -동거	합법
2	헤나	몽골	여	41세	2002	공원		썸(1-5)의 어머니					서울		불법

※ 표에 기술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

※ 1-1 몽사가, 1-4 아리오, 1-3 썸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임.

※ 1-5 탕소트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남성과 재혼하여 한국국적 취득 직전 단계임.

※ 1-5 탕소트의 경우 한국어가 매우 서툴러 아리오(1-4)의 도움을 받아 면담이 진행됨.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면담 대상자로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그들을 돌보고 있는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선정하였다. 국내학교 교사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학교인 M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이후 학생들의 특성과 제도적·실제적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감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들을 선정하였다(<표 4> 참조).

<표 4> 심층 면담자(교사와 시민단체 종사자)의 주요 배경

사례번호	이름	주요 특징
3-1	박미순	43세, 경력 16년차, 몽사가(1-1)의 담임교사
3-2	배영옥	50세, 경력 26년차, 오랑(1-2)의 담임교사
3-3	이경애	42세, 경력 6년차, M학교 교감
3-4	박현주	39세, 경력 6년차, M학교 행정실장
3-5	손주희	40세, 경력 17년차, 무지개초등학교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 담임교사
3-6	신대광	44세, 경력 11년차, 별빛시 평화중학교 교사
3-7	김성주	48세, 경력 20년차, 별빛시 통합(한국인+외국인) 어린이집 원장
4-1	조영지	43세, 경력 7년차, 햇빛시 이주노동자상담소 사무국장
4-2	박주영	42세, 경력 10년차, 별빛시 이주노동자상담소 총무
4-3	최영훈	40세, 경력 11년차, 별빛시 무지개 성당 주임신부
4-4	글란	44세, 경력 14년차, 필리핀이주노동자의집 신부, 필리핀인
4-5	이영민	34세, 경력 10년차, 다문화교육과정 전문가

※ 표에 기술된 이름과 학교명, 지명은 모두 가명임.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학교 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더불어 지방에 소재한 ‘무지개’(가칭) 초등학교의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의 수업과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삶을 참여관찰하고, 담임교사를 면담하였다. 이 학급은 2006년도에 구성된 학급으로 2009년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15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들의 국적은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콩고, 일본 등이며, 연령은 만 8세부터 만 14세까지로 다양하다¹²⁾. 체육과 음악, 미술 등 학생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교과목은 일반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며, 국어, 사회, 수학 과목 등은 특별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디딤돌’ 학급의 형태이다. 담임교사는 2006년 이후 줄곧 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교직경력 17년차이다.

면담·참여관찰 자료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23개월간 연구자가 외

12) 이 학급은 2006년에는 7개국 출신 13명으로 시작하였으며, 출·입국 등으로 인하여 매년 재적 학생이 변화하고 있으나 그 수와 출신국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하여 참여관찰 대상 학생 각각의 구체적인 신상과 주요 배경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민 이주노동자의 자녀, 어머니, 교사, 시민단체 종사자 등을 심층면접하고, ‘무지개’ 초등학교의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을 참여관찰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회당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차례 이상 면담하였다. 처음에는 질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면담자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과정을 통하여 국내 청소년들에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후에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참여관찰은 담임교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방과후, 운동회 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과 학생 개인별 행동 특성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참여관찰은 학기초와 학기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과정상에 나타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 정체성 형성과 성장, 한국에서의 적응,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적응 등을 고려해야 하는 다소 특별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과정상의 문제를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심층면접 대상자 외의 교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IV. 교육의 실태와 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과정상의 실태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주를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성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 접근’은 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취학 이전의 교육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교육 경험’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 성취’는 학교 교육 결과로서의 성취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세 범주 상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1. 교육 접근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관련 법안과 시행령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와 달리 상당수가 정규 학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2장 1절에서 정부부처의 추정치로도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 시민단체 종사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가 공교육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도의 비일관성, 학교장의 의지 또는 인지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제도들은 제도의 주무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부가 가입한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신분의 ‘불법’ 유무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노동자 자녀인 유아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의 제도상으로는 이주노동자 어린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아이들과 달리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없어요. 우리 어린이집의 정원이 30명인데 5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은 25명만큼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받고 싶어도 받으면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니까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들이 45세가 되도록 컸고,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육아를 하지 못하니까 봐줄 곳이 필요해요. 애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례번호 3-7.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인원만큼 재정지원을 받는데 ‘불법’ 체류 신분인 유아들은 등록이 되지 않고, 따라서 나머지 인원만큼의 지원으로 전체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이러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간의 불협화음도 확인되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 자녀를 위한 구제조치가 생겨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제출국이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나 위치가 노출되는 신변불안을 더 느끼게 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다니기가 더 불안해 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¹³⁾(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한국에서 M학교에 다니기 전에 2년 정도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선생님이 비자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비자 없으니까 무서워서 학교를 그만 뒀어요. 그래서 M학교로 왔어요.(사례번호 1-4. M학교 학생)

‘불법’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재학이 허용되어 있지만, 그 가족들의 체류가 ‘합법’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가정의 입장에서는 홀가분하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를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이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입학을 요청하여도 학교장의 반대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한 시간 반 넘게 차를 타고 오는 아이도 있으니까요. 사실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거부를 하니까 자신들을 받아주는 학교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는 먼데, 다들 와요.¹⁴⁾(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13) 참여관찰 초기에 학생들은 관찰자를 매우 경계하였고, 가까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과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낯선 사람을 매우 경계하는 상황이었다.

14)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에 대한 참여관찰 과정에서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확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근처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에 있는 이 학급의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00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학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까지 와서 기숙사 생활을 자처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사례번호 3-3. M학교 교사)

교장 선생님과 교감, 교무주임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주노동자 자녀들 중에 국내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라도 받아서 교육시키자고 설득을 해봤지만, 모두들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고조차 하지 않더라고요.(사례번호 3-6. 평화중학교 교사)

학교장들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입학を 꺼리는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 불법체류 신분 자체가 가지는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언어/문화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특별학급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능력이 부족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기존 학생들과의 정서적인 측면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입학을 꺼리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심리적 위축과 집단행동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는 그 것 때문에 아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합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아이들과의 적응문제 때문에 입학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정식 학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원 내로 관리하면 학교장이 (학습지도 또는 생활지도 등의)향상을 책임져야 하니까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듯해요. 안전사고나 따돌림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셋째, 이주노동자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제도적 조치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 때문 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신변불안을 느끼는 것도 불법체류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학비와 급식비 등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한국에서 우리 아들한테 한국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돈 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사례번호 2. 무학 어머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입국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하게 된다면, 국내 입국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과 고국으로의 송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배려의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진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교육 경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진입한 이후, 교육 경험의 실태를 수업 적응의 실태, 동료집단과의 관계, 교육비의 여건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실태를 확인하였다. 우선 수업 적응의 실태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몽골학교 교사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재네들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5-6살이라고 해도 노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한국 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한국 애들과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5-6살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사례번호 3-7. 어린이집 원장)

나라에 상관없이, 그 나이는 한국말을 가르치면 한국말하고, 손으로 먹게 하면 손으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게 하면 숟가락으로 먹는 시기라서요, 가르치기 힘들거나 발달이 늦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한국 아이들과 똑 같아요. 아이들이 참 잘 따라와요.(사례번호 3-7. 어린이집 원장)

유아기의 교육 단계에서는 다른 단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여러 명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자녀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였기 때문에 수업에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 하고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한 명만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노동자 부부가 있어요. 아이의 엄마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써주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큰 문제없이 묻혀서 지내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아이들과 함께 교육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 아이 엄마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말썽이 있을 때 상담소 쪽으로 연락이 오곤 해요.(사례번호 4-1. 이주노동자상담소 사무국장)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출생한 유아기 자녀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유년기를 모국에서 지낸 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경우이기 때문에 새롭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업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적응 단계와 속도가 제 각각이에요.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과 적응상태에 따라 분리해서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외국 아이들을 분리해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겠지만, 일반 학급에 넣는 것과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시간표나 교과서, 교사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외국 아이들을 한국아이들의 학급에 온종일 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한국 학교 적응을 필요로 하는 초기에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효과적이긴 한데,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특별학급으로 외국 아이들을 따로 떨어뜨려놓으면 다음 날 일반 학급에 가서 섞이질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¹⁵⁾.(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습 능력의 격차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더욱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료들이 수업 적응 위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⁶⁾.

수업시간에 앉전히 앉아서 열심히 듣긴 하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 보고 많이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사례번호 3-1. K중학교 교사)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하시는 것 가운데 50퍼센트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나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겠어요. 이러다보면 나중에 더 공부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몽골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사례번호 1-1. K중학교 학생)

(한국) 애들하고 지내는 것은 좋은데,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 가지고요. 공부가 잘 안 돼요.(사례번호 1-2. K중학교 학생)

요즘은 모르는 것을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잘 가르쳐줘요.(사례번호 1-1. K중학교 학생)

현재로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방과 후에 외국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일부 과목에 대하여서 외국 아이들이 공부를 따라가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개별적으로 외국인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진행을 했거든요.(사례번호 3-2. K중학교 교사)

둘째,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함께 재학하고 있는 동료집단과의 관계는 초등학교 단계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의 경우 피부색이나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지능력이 덜 발달한 관계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잘 어울

15) 실제 참여관찰 과정에서 일반학급의 수업에 참여하기 싫다고 특별학급에 남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다.

16) 이 논문에 진술된 중학생들은 M학교에서 한국과 M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졸업 후, 공립중학교로 입학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주 후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비하여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의 학생들이다.

리고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인종/국가적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요. 아이들끼리는 편견이 없어요. 애들은 모이면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장난감이라 이런 것들로 생기는 다툼은 어른들 말을 따르기 때문에, 금세 풀어지고 다시 잘 어울리고 그래요. 유아들은 서로 문제가 없고, 잘 지내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잘 어울려서 길러지면 똑 같은 아이라 생각하게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갈라서 자라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사례번호 3-7. 어린이집 원장)

학교 행사로 운동장에서 캠프를 하는데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에 집단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한국애가 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애들은 놀린 적 없다고 그러고요. 외국 애들은 심리적으로 자격지심 비슷한 게 있어서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도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한국 애들도 개네들을 비하하는 모습이 암묵적으로 보이기도 하지요¹⁷⁾.(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단계에서는 서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놀림이나 집단따돌림 현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¹⁸⁾.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연령대의 학년에 입학/편입되기 때문에 쉽게 친구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일반 초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한 반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을 만들긴 했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보다 2-3세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반에 들어가서 학교를 같이 다닐 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저는 다른 학교를 다니

17) 참여관찰 결과, 폭력적인 상황은 대부분 체적이 비교적 큰 백인계통의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반대로 흑인계통의 학생들은 모든 참여에서 매우 소극적이었다. 피부색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든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

18) 연구 대상이 중학생의 경우 몽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점 때문에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니까 그냥 가끔 연락정도만 해요.(사례번호 1-2. K중학교 학생)

저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우리들보다 3살 어린 애들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1-1. K중학교 학생)

한국어 실력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한국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 학생들의 사고 수준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여관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2-3년 낮은 연령대의 학년에 편입되는 상황은 정체성 형성과 학교 적응, 또래관계 형성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셋째, 교육비의 여건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업과 관련된 교구를 구입하지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반 애들 거의 모두가 체육복을 구입하지 못했어요. 있는 애들도 동복이나 하복 가운데 한 벌이 있을 뿐이죠.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고요. 학급 운영비로 구입을 해 줍니다. 물론 그 돈도 빠듯해서 학기 중간정도부터 제 돈으로 구입을 해 주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그러다보니 (준비물 부족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할 때도 많아요.¹⁹⁾(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이후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3. 교육 성취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연령대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정규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

19) 참여관찰 학급에서 동계·하계 체육복 모두를 갖춘 학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준비물은 거의 모두가 준비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용돈도 독지가와 교사의 후원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으로 짐작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표 1>의 ‘외국인 가정 자녀 재학현황’도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여 준다. 따라서 ‘교육 접근’과 ‘교육 경험’의 과정을 거친 후, 성취의 정도와 격차의 누적에 성장과정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와 인성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학업성취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접근’과 ‘교육 경험’의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육 성취’ 수준을 매우 낮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국 후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같은 동료집단의 성취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태였다. 특히,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 비하여 국어, 사회, 국사 등의 언어·문화에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온) 00학생들이 학업적인 면은 확실히 떨어져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지필로 하는 경우는 더 잘 안되죠.(사례 번호 3-1. K중학교 교사)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이 가장 낮았죠. M학교에서 아무리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여기 와서 직접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한 학기 동안은 성적이 거의 밑이고요. 서술형 문제는 아예 답안지를 못 쓰더라고요. 서술형 50점이 들어가는데, 답안을 백지로 냈더라고요.(사례번호 3-2. K중학교 교사)
그나마 영어나 수학은 나운데 한자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국어와 사회, 국사 같은 것도 힘들고요.(사례번호 1-2. K중학교 학생)

그렇다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학업성취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응기간이 짧고 각 학생들에게 적합한 특별 교육과정이 구체화 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저희 반에서 자체 시험을 보거든요.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다른 반 아이들과 비교하면 점수는 매우 낮지만, (자체 평가를 통해서)특별학급에서 진행한 수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대체적으로 70%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충분히 성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²⁰⁾(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둘째, 인성 형성의 과정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입국 후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와 달리, 방치기간을 거치면 학업성취와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도덕과 예절에 대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상태에서 방치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행동에서 자제가 안돼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굳이 문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 상황도 외국 아이들의 경우는 폭력사태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많은 OO 지역은 학교나 학교 밖에서 그 아이들이 폭력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학급담임이 학생을 꼭 담당하는 초등학교는 덜 한데, 중학교에 가서 다소 교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은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가끔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인지도 잘 몰라요.(사례번호 1-3. 무학 청소년)

(한국학생들과 외국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총괄평가 시험을 보면 거의 0점이고 잘하면 30-40점 수준이에요. 대부분 같은 학년의 다른 반에 꼴찌보다도 성적이 낮죠. 한국에 온지 3-4개월 된 아이들이 그런 시험을 보면 그게 의미가 없지요.(사례번호 3-5.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언어와 문화의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단계별 특별 학급 구성 등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

20) 참여관찰의 결과, 특별학급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매우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였고, 교사가 설정한 목표에 대부분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학급의 수업상황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계속 방치된다면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들에게 학교 입학의 기회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진입한 이후에도 수업 적응의 어려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성취 수준도 매우 낮았으며, 학교 교육 중단 시기가 길었던 경우 인성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외국인 학교, 외국인근로자가정특별학급 등 이른바 ‘디딤돌 학교(학급)’을 거쳐서 정규학교에 편입 또는 입학한 경우는 입국 후 바로 일반 정규학교에 진입한 경우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보다는 유아기의 교육 과정 상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격차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디딤돌 학교(학급)의 설치 확대와 발달단계 초기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과 다른 양상의 교육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학교 입학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입학을 하더라도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달리 성장과정에 입국한 경우가 적지 않아 편입 학년과 연령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하여 학업의 지속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모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과제, 준비물, 예·복습 등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교육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와 다른 양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과 별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2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과 더불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과 달리 이주노동자 가정 구성원들은 상당수 이른바 ‘불법’이라는 틀에 얽매어 있지만, 한국 사회 산업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인권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모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에서 계속 성장하여 성인이 이후에 정주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는 비록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비중 있는 소수 집단(ethnic group)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도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면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내의 여러 법과 제도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성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학교에서 입학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입학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입학한 이후에도 적응을 위한 별도의 과정(課程)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매우 낮은 학업 성취도를 얻고, 인성교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관련 제도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공교육 기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회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 대책이 구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가 방치된 채로 성장하게 된다면,

‘격차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여 소외계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극화의 심화과정을 거쳐 성인기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특정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격차의 누적 해소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녀와 부모, 교사, 시민단체 종사자 등을 특성에 따라 안배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성별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외모(인종)와 국내 출생 여부, 재학하는 학교의 특성 등에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실태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특성별 교육 실태와 문제, 원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태중(2002). 교육 불평등 완화방안 탐색 정책연구. 서울: 국회교육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국무총리실(2008).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국무총리실. 미발간자료.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제16권 제3호, pp. 95-129.
- 박성혁(200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 자원부.
- 법무부(2008). 보도자료(제목 : 2007년도 출·입국자 4천 만명 육박!). 법무부.
- 석원정(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교육비평*, 제10호, pp. 170-182.
- 설동훈(2005).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법무부.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한건수·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 61-83.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pp. 137-157.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서울: 한울.
- 이민경·김경근(2009).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전략, *한국교육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2호, pp. 105-134.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 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7). 外国人材受入問題に関する第2次提言.
- Banks, J.A.(1994).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Coleman, J.S.(1968).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8, pp. 7-22.
- 파이낸셜뉴스 2009. 1. 17일자 23면 기사 :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닌가
- 毎日新聞 2008. 10. 13일자 2면 기사 : 移民受け入れ提言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aced by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with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Oh, Sung-Bae*

This study explores the opportunities and the challenges faced by the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Even after they gain legal access 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fter a great deal of effort, they face a variety of barriers in many areas. They tend to find it hard to fit in at school, make friends or get along with their peers.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s are poor and they often undergo undesirable experiences in the personality formation process. The unstable circumstances that im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e faced with only makes these problems worse. Economic hardships and stress due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are typical examples. To help them adjust to life in Korea and become healthy and productive members of this society, education as well as econom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how family and school related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ir experience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al opportunity, immigrant workers, multicultural education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14일, 심사완료일 : 8월 7일

* Dong-A University